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19567호, 2006.6.29.제정,2006.7.1. 시행)의 제정·시행과 현행 조례 조문 중 상위 법령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요율을 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수수료 요율인상 - 인감증명 외 13건
○ 조문정비 -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외 22건
○ 조문삭제 -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외 2건
○ 조문신설 - 의료기관 개설신고 외 7건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발췌 별첨)
「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별표
나. 개정조례안 : 붙임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다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신.구조문 대비표

(단위:원)

현 행				개 정 안			
구 분	기 준	요 액	비고	구 분	기 준	요 액	비고
(증 명)				(증명)			
1. 인감에 관한 증명				1. 인감에 관한 증명			
①인감증명	1 통	300		①인감증명	1통	600	
②인감의 개인신고	1 건	200		②인감의 개인신고	1건	600	
2.~6.① (생 략)				2.~6.① (현행과 같음)			
②공부의 등·초본 교부				②공부의 등·초본 교부			
· 대장문서	1통	300		· 대장문서	1통	500	
· 토지도면	1통	300		· 토지도면	1통	700	
· 건물도면	1통	300		· 건물도면	1통	500	
③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	1			③지적공부 열람			
· 기본료	시간당	100		· 대장	1필지	300	
· 초과료	10분당	100		· 도면	〃	400	
④ (생 략)				④ (현행과 같음)			
7. ①~② (생 략)				7. ①~② (현행과 같음)			
③도시계획확인원	1필지	300		③토지이용계획확인원	1필지	1,000	
				(칼라또는 도면첨부시)	〃	1,500	
④~⑨ (생 략)				④~⑨ (현행과 같음)			
《신 설》				⑩개별공시지가확인서	1필지당	800	
8. 지방세에 관한 증명				8. 지방세에 관한 증명			
①납세증명	1 통	300		①납세증명	1 통	800	
②세목별과세증명	〃	300		②세목별과세증명	〃	800	
③주택가격확인서	1개년도별	300		③주택가격확인서	1주택당	800	
9.①~⑦ (생 략)				9. ①~⑦ (현행과 같음)			
10.~11.⑥ (생 략)				10.~11.⑥ (현행과 같음)			
(인가, 허가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등)				(인가, 허가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등)			
1. 일반행정 관계				1. 일반행정 관계			
①~② (생 략)				①~② (현행과 같음)			
③공유재산의 대부 신청	1건	신규500 계속300		③공유재산의 대부 신청	1건	신규5,000 계속2,000	
④~5 (생 략)				④~5 (현행과 같음)			

현 행				개 정 안			
구 분	기 준	요 액	비고	구 분	기 준	요 액	비고
(인가, 허가신고, 원청 등록, 지정, 확인등)				(인가, 허가신고, 원청 등록, 지정, 확인등)			
6. 보건, 사회관계				6. 보건, 사회관계			
①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	1건	500		① 〈삭제〉			
②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							
③약국 재개업 신고	〃	1,000		② 〈삭 제〉			
《신설》	〃	1,000		③ 〈삭 제〉			
《신설》							
				④의료기관개설신고	1건	20,000	
《신설》				⑤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	〃	10,000	
《신설》				변경 신고			
				⑥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	〃	20,000	
《신설》				⑦부속의료기관 개설	〃	10,000	
《신설》				신고 사항 변경신고			
				⑧치과기공소 인정신청	〃	10,000	
《신설》				⑨치과기공소 양도,양수	〃	10,000	
《신설》				신고			
				⑩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	〃	10,000	
④ ~㉒ (생 략)				⑪안경업소 양도,양수신고	〃	10,000	
				⑫ ~㉒ (항 변경)			